

【 행정법 】

1.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공무원 甲은 2015년 1월 A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하였다.
- A 아파트에는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시공 시부터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공무원 甲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
- 그 후 2015년 2월 A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 화재로 A 아파트에 살고 있던 B가 사망하였다.
- B의 유족은 甲이 소속된 乙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 ① 甲에게 직무수행상의 경과실만 인정되어 B유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B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 ② 甲에게 위법한 직무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乙지방자치단체에게 甲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고,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④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이므로, 소방특별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없다.

2.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가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그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 ② 법령상 처분의 취소가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 처분의 ‘철회’에 해당한다.
- ③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행정법 】

4.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 ②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라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
- ③ 법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라도 해당 법령 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 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본다.
- ④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은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용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5. 소방공무원 甲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은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甲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을 하면, 그 해임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甲의 처분 전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해임처분을 받은 甲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심리 결과 甲에게는 해임이 아닌 파면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원징계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甲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

6.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 ③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 ④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만을 다룰 수 있을 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는 다룰 수 없다.

7. 사정판결 및 사정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경우 그 무효 또는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다.
- ②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취소심판 또는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정재결이 인정된다고 한다.
- ③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④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부담한다.

【 행정법 】

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히무효이지만, 행정내부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에 따라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은 위헌적인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 ④ 특정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9.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조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해당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③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중 임기만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무효확인으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

10.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 ③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11.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 ③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④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행정법 】

12.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 조세의 과오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하지 않아도 과세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1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4대강 정비사업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2012년도와 2013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대학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국가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대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일 뿐, 위 계획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성격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권력 행사’로는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④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관계이익의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주차장 설치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행정법 】

14. 행정법관계에서의 계약에 관한 설명 중, 바른 것의 개수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인 또는 이행 청구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ㄷ.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ㄹ. 「지방자치법」의 해석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15.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특권을 가진다.
-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③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제1차로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16.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17.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ㄴ.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ㄷ.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새로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행정법 】

18.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19.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④ 소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허가처분을 지체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되어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③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으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에 반한다.

2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③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 행정법 】

2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바른 것의 개수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부작위위법확인소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ㄴ.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이전의 거절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 ㄹ.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23.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에 의하면,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또는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의 관점에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보상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상당보상’을 의미한다.
- ②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구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국가는 그 자발적인 협조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4. 「행정심판법」의 규정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러한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
①	90일	14일	180일	14일
②	90일	21일	1년	14일
③	90일	14일	180일	7일
④	180일	21일	90일	7일

25. 행정소송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임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수임행정청 명의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임행정청을 피고로 본다.
- ② 행정처분이 있는 후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고 또는 소송보조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이 직권으로 피고를 결정한다.
- ③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이 없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이 A 소방안전본부장에 대하여 해임처분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당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조치한 경우, 징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하므로 소방청장은 위와 같은 조치요구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지지 않는다.